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39404(본소), 2013나39411(반소)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39404(본소), 2013나39411(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10 선고 2012가단506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C

변론 종결 2014. 9. 24.

판결 선고 2014. 11. 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10. 선고 2012가단50697(본소),

2013가단1430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광주시 E 대 328㎡ 중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설치된 시멘트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10, 11, ㄷ, ㄴ, ㄱ,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 부분 토지 14㎡를 인도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광주시 E 대 328㎡ 중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 ㄷ,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에 관하여 2011.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 잡종지 165㎡(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트와가 단층주택 57.32㎡(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9. 12. 5. F 명의의, 1990. 10. 24.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E 대 328㎡(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D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원고 주택 중 일부인 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은 피고 소유인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ㄷ, ㄴ, ㄱ,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 부분 14m²[이하, '선내(라)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주택의 전 소유자들과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이 설치된 상태로 이 사건 원고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선내(라)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전 점유자인 G의 점유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11. 12. 1. 선내(라)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선내(라)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라) 부분에 관하여 2011.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선내(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G와 원고가 선내(라)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적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 토지의 형상이 위 선내(라) 부분을 포함하는 원고의 현재 점유 부분 토지의 형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위 선내(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D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원고 주택 중 일부인 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이 피고 소유인 E 토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선내(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을 철거하고, 선내(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내(라)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내 (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정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영길

판사유지현

판사권세진

별지